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학술지 발행 목적

1.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동남권 중심 다문화 전문연구 학술지 필요성 대두
2.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간의 협력을 통한 다문화사회교육 연구 분야 선도
3. 다문화연구 전문가의 상호교류 기회 제공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연구윤리규정

2017년 12월 1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와 각종 출판물에 관계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에 투고한 논문투고자와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윤리규정 서약)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편집위원회는 특집 논문을 접수할 때는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논문 투고자나 편집위원, 심사위원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공개한다.

제5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 ① 논문투고자는 사용하는 자료의 위치, 변조, 표절, 중복투고, 부당한 저자표기 등 제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행위를 말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 ① (책임)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윤리규정)

- ①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내외, 간사 1인을 둔다.
- ②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함께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 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조사하고,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 조치를 의결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비 공개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⑦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의 불허,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용 무효화,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⑧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제10조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
- ② 연구윤리규정 수정은 본 연구소 규정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제00집

연구윤리 자가 점검 확인서

논문 제목 :

투고자의 이름(소속) :

※ 다음의 항목을 전부 확인(√)해 주십시오.

	점검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투고자는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습니까?		
2	자신이나 타인의 연구 결과를 무단 도용하거나, 기존의 연구 결과를 새로운 성과인 듯 변조 또는 날조, 표절한 행위를 하였습니까?		
3	인용 자료에 대한 각주, 참고문헌 표기를 올바르게 하였습니까?		
4	이 논문의 작성에 기여한 공동 연구자나 피실험자를 정당히 대우하였습니까?		
5	직위나 친분을 악용하여 공동 저작권(주/교신저자)을 요구하였습니까?		
6	이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 투고하거나 이중 게재를 의도하였습니까?		

이상의 항목을 모두 확인하였고,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투고자 : (서명)

※ 서명 위치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십시오.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편집위원회는 다문화연구소의 학술논문집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의 발행을 위해 구성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이 관련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장 선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소장이 임명하며,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편집위원장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위원회는 연 2회 이상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가지며,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할 시 성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조(편집위원 자격 및 임기)

편집위원의 자격과 임기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편집위원의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다문화 관련 기관장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편집원칙)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1) 접수된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2)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접수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학회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심사자의 심사평에 의거하여 수정된 논문의 완성도를 평가한 후에 최종적으로 게재될 논문을 선정한다.

(4) 동일 필자의 3회 연속 게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제8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논문투고규정

1. (게재 원칙 및 논문 종류)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다문화사회 및 교육 전반에 걸친 학문분야의 학술논문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발간 횟수 및 원고 모집 시기)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학술지는 연 3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로 규정한다. 원고 모집 시기는 논문 발행 2개월 전까지로 한다.
3. (투고 자격)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및 한국문화, 한국문화교육, 한국어교육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연구자 및 일선학교 교사, 교육전문직이어야 한다.
4. (논문 분량) 투고 논문은 학술지 논문 규정 분량으로 20매 이내이어야 한다.
5. (논문 심사 방법)
 - ① (논문 접수)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본 학술지 논문 투고 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 구성)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하여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동일 분야 전공자 각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
 - ③ (심사 절차 및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심사 의견서를 보낸다. 이때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문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조치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초심 15일 이내, 재심은 7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 외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절차는 본 학술지 심사규정에 따른다.
6.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 ① 논문 투고 시, 입회비 1만원(최초 1회)과 연 회비(매년 1회) 2만원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 ② 논문 투고 시, 논문 심사료 6만원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 ③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료를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게재료 : 전임 10만원 / 비전임 5만원 / 연구비 지원 논문 20만 원
- ④ 초과 게재료는 편집 기준(20매 이내) 초과 한 페이지 당 1만원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 ⑤ 평생회원은 회비 50만원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7. (논문 저작권의 양도) 심사 후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논문의 저작권에 대해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의 이용을 허락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8년 4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원고작성 요령

1. 원고작성

- 1) 작성 매체 : 원고는 한글 2002 이상 버전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편집 용지(F7) : 용지설정과 여백주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편집용지: 사용자 정의, 폭 152, 길이 223
 - 여백주기: 위 18.0, 아래 17.0, 왼쪽 21.0, 오른쪽 21.0, 머리말 12.0, 꼬리말 12
- 3) 원고 각 부분의 글자 속성 및 문단의 속성(F6)

	글자체	크기	첫째 줄	간격			정렬 방식
				줄 간격	문단 위	문단 아래	
제목	바탕체 (진하게)	16		160	한 줄 띄움		가운데
부제목	바탕체	14		140			가운데
필자명	바탕체 (진하게)	12		160	한 줄 띄움		가운데
소속	바탕체	12		140			가운데
목차	바탕체 (진하게)	10.5		160	한 줄 띄움		가운데
목차의 내용	바탕체	9	들여쓰기 12	140			혼합
<Abstract>	Times New Roman	10	좌우 여백 15	140	한 줄 띄움		혼합
[Key Words]	Times New Roman(bold)	9		140	한 줄 띄움		혼합
1. 장 제목	바탕체 (진하게)	12		160	두 줄 띄움	한 줄 띄움	혼합
1.1. 절 제목	바탕체 (진하게)	11	들여쓰기 15	160	한 줄 띄움	한 줄 띄움	혼합
1.1.1. 항 제목	바탕체	10	들여쓰기 15	160	한 줄 띄움		혼합
본문	바탕체	10	들여쓰기 15	160			혼합
예문 또는 (1)	바탕체	9	왼쪽 여백 20	140	한 줄 띄움	한 줄 띄움	혼합
표·그림 제목	돋움 (진하게)	9		160	한 줄 띄움		가운데
표 내용	돋움	9		140		한 줄 띄움	혼합
각주	바탕체	9	내어쓰기 15	140			혼합

참고문헌 제목	바탕체 (진하게)	11.5		160	세 줄 띄움	한 줄 띄움	혼합
참고문헌 내용	바탕체	10	내어쓰기 30	160			혼합
필자 소개	바탕체 (진하게)	9		140	두 줄 띄움		혼합

- (1) 제목이 두 줄 이상 경우 줄간격을 130으로 한다.
- (2) 목차의 내용은 장, 절까지만 기록한다.
- (3) 주제어는 5~8개의 단어로 표시한다.
예) [Key Words] cultural identity, multiculture, multicultural education...
- (4) 영문 요약문은 250 단어 이내, 25행 이내로 작성한다.
예)

Kim ○○○. 2017. 11. 30.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1, 16-32. This study aims to argue that ...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cultural identity, multiculture, multicultural education...

- (5) 장, 절, 항의 제목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예) 1. 서론 / 2.1. 다문화교육 / 2.1.1. 다문화교육 현황
- (6) 표와 그림은 다음 양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① 모든 그림과 표에는 이름을 달아야 한다. 이름은 그림의 경우 그림 하단에 <그림 1 --->, 표의 경우 표의 상단에 <표 1 --->과 같이 표기한다.
 - ② 표의 테두리는 0.12mm로 통일한다.
- (7) 주는 각주로 하며, 내용주를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지주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본문에서 다룬다.

… 최현배(1937: 205)에서는 …

… 잡음씨로 처리했던 것이다(최현배 1937: 205).

<유의 사항>

- ㄱ. 온점은 괄호 뒤에 찍는다.
- ㄴ. 논저가 발표된 해와 쪽수를 다시 괄호로 처리하지 않는다.
- ㄷ. 저자(필자) 다음에 아무런 부호도 사용하지 않는다.
- ㄹ. 각주 번호는 온점 뒤에 찍는다. (예시: …것이다.¹⁾)
- (8)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부분에 실으며, 다음 양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① 논문의 경우 저자(연도). 논문제목, <학회지명> 호수, 학회명. 쪽수.
예) 000(1998).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와교육> 3호, 다문화사회교육학회. 16쪽~32쪽.
 - ② 저서의 경우 저자(연도). 서명. 발행지:출판사

③ 단, 로마자로 표기되는 참고문헌의 경우는 도서명을 이탤릭체로 한다.

예) Kim, Y.(1998). *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Seoul: K. Press

④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든 저자의 이름을 밝히되, 제1 저자, 공동 저자(교신 저자 우선)의 순으로 적는다. 저자와 저자 이름 사이는 가운뎃점으로 구분한다.

⑤ 참고문헌은 한국어 문헌, 중, 일, 기타 외국문헌 순으로 수록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기타 외국문헌은 저자명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9) 필자 소개에는 필자의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순으로 명기한다.

2. 원고작성 예시 (아래 예시 참조)

※ 원고작성방법 및 예시는 2021년 9월1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한 줄 띄움)
논문 제목

논문 부제목
(한 줄 띄움)

필자명

(소속)
(한 줄 띄움)

————— **『목 차』** —————

1. 들어가기
2. 다문화교육
- 2.1 다문화교육실태

(한 줄 띄움)

<Abstract>

Kim abc. 2017. 11. 30.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1, 00-00. This study aims to argue ...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 줄 띄움)

[Key words] cultural identity, multicultural, multicultural education...

(한 줄 띄움)

(한 줄 띄움)

1. 들어가기

(한 줄 띄움)

이 연구는 다문화교육...

(한 줄 띄움)

1.1 다문화교육실태

(한 줄 띄움)

이 항에서는 다문화교육...

(한 줄 띄움)

1.1.1. 다문화교육 현황

(한 줄 띄움)

다문화교육의 현황은 <표 1>과 같다(홍길동 2021: 43). 이와 같아 홍길동(2021: 43)에서는…

(한 줄 띄움)

(예문) 예문은 원쪽 여백 20, ~~줄간격~~ 140, 아래위 한 줄 띄움을 원칙으로 한다.

(한 줄 띄움)

<표 1 다문화교육 현황>

다문화	교육	현황	표

(한 줄 띄움)

위의 표와 같이 표 제목은 표의 위에 붙인다.¹⁾

(한 줄 띄움)

그림

<그림 1 다문화교육 현황>

(한 줄 띄움)

위 그림과 같이 그림 제목은 그림의 아래에 붙인다.

1)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논문 작성 예시 원고 작성 요령

(한 줄 띄움)
(한 줄 띄움)
(한 줄 띄움)

참고문헌

(한 줄 띄움)

000(1998).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와교육> 3호, 다
문화사회교육학회, 16쪽~32쪽.

Kim, Y. (1998). *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Seoul: K.
Press

(한 줄 띄움)
(한 줄 띄움)

필자 소개

(한 줄 띄움)

성 명 : 000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000대학 000과
주 소 : 부산광역시 [우편 번호]000-000
전화번호 : 000-000-0000
전자우편 : 000000000000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심사규정

1. (논문의 심사)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① 투고 논문이 본 학술지의 「논문투고 규정 및 원고 작성 요령」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② 내용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논문의 주제가 본 학술지에 부합하는가
- 논문의 제목이 내용과 일치하는가
- 논문의 구성 방법에 있어 논리성과 독창성을 갖추고 있는가
- 논문의 서술에 있어 논리성과 독창성을 갖추고 있는가
- 논문의 기대 효과가 타당하고 학문적 기여도가 있는가
- 영문 초록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 논문의 인용과 참고문헌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2. (논문의 심사 판정) 심사위원은 평가 결과 및 그 사유에 대해 명시하여 평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게재 가

② 수정 후 게재

③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

3. (심사 후 게재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결정은 심사위원 3인 점수의 평균점수로 한다.**

① 게재 가 – 현재대로 게재한다.

② 수정 후 게재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확인 후 게재한다.

③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다시 심사를 한다. 심사 과정은 동일하다.

④ 게재 불가 –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

4. 위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논문 심사서

논문 제목			
-------	--	--	--

◎ **심사자:** 심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속	
주소			
이메일	@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 **심사일:** 심사를 완료한 일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심사 내용:** 아래의 해당란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항목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이하
요건 심사	학술 논문의 기본 형식 -학술지와의 연관성 -논문투고 규정 준수 여부						
	논제의 명료성 -주제의 명료성 -주제와 논지의 일치성						
	논문 구성의 적절성 -목차에 따른 논지 전개 -내용의 통일성, 일치성						
	용어 및 개념의 적합성 -용어 사용의 적절성 -영문초록 작성의 적합성						
	인용의 정확성 및 표절 여부						
	논문의 독창성						
	기존 연구의 활용						
	연구 방법의 참신성						
내용 심사							

	자료 활용의 정확성						
	학문적 기여도 및 연구 의의						

◎ **게재 여부:** 아래의 해당란에 **실점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평가 (총점)	게재 가 (8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79~70점)	게재 불가 (69점 이하)
	점	점	점

◎ **판정 소견:** 항목별 심사 내용, 수정 및 지적 사항, 종합 소견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려(69점 이하)’로 판정하시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논문 투고자의 심정을 배려하여 서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